

##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1월 8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 : 박성규 의원 외 8명
3. 제정이유
  - 행정안전부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4. 주요내용
  -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항(제12조제3항)을 개정
    - 본회의 ⇒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6. 1. 8. ~ 2026. 1. 15.(초일불산입 5일간)

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### 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  
(전화: 061-550-5900, FAX: 061-550-5907)

#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## 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(전화: 061-550-590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끝.



##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2조제3항 본문 중 “**본회의**”를 “**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**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<u>본회의</u>에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.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	<p>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